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최종공포일 2022.10.3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 활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 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말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라고 한다)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행동기준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내부 준법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 란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주관부서’ 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CP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유관부서’ 란 주관부서가 CP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감사담당부서, 인사담당부서 등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4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① 사장은 회사의 CP 구축 및 효율적 CP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주관부서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자동 승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1. 주관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2. 주관부서장의 업무와 자율준수관리자로서의 직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제 5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조사 요청 권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권한
3. 자율준수관리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출요구 권한 및 예산편성요구 권한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총괄
2. 자율준수 관련 교육 총괄
3. 자율준수 관련 모니터링 총괄
4. 자율준수편람 관련 총괄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한 대응조치 요구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유관부서 통지
7. 기타 CP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7 조 (주관부서의 직무)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2. 자율준수 관련 교육 시행
3. 자율준수 관련 모니터링 절차 운영
4.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한 대응조치 요구사항 진행 확인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유관부서 절차 진행 요청
7. 기타 CP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 조 (인사상 불이익의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직원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CP의 운영

제 11 조 (자율준수의지 선언)

- ① 사장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 ② 자율준수의지는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한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12 조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이하 ‘자율준수 편람’ 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게시·배포 등을 통해 전직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관계 법령 등의 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교육 프로그램)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저촉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자율준수편람에 관한 교육
 -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내용, 위반 사례 등에 관한 교육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 실적을 내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 14 조 (모니터링 제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1회 이상 CP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생 등 필요 시 사장에게 보고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 15 조 (CP 효과성 평가)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6 조 (문서 관리)

- ① CP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관한 업무 수행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보관되어야 한다.
- ③ 주요 관리대상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장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 2.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 3. 내부 감독 활동 관련 문서
 -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 5. 자율준수 교육 관련 문서
 - 6.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제출한 자료
- ④ 문서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서규정」, 「문서업무절차」 및 「전자문서업무절차」에 따른다.

제 4 장 제재조치 및 포상

제 17 조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관부서에 이를 통지하여 징계 등 제재조치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부서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를 진행할 경우,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임직원에 대해 관련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18 조 (포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제 19 조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2.10.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